사업방법서 별지
(휴대폰보험)

1. 보험의 종류 : 특종(기타)/기타

2. 보험목적에 관한 사항
   가. 동산(휴대폰)
   나. 비용손해

3. 보험기간
   보험기간은 1년을 원칙으로 한다. 그러나 1년 이상의 장기계약 또는 1년 미만의 단기계약을 체결 할 수 있다.

4. 보험료 납입에 관한 사항
   가. 보험료는 보험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보험료영수증과 상환하여 그 전액을 영수한다.
   나. 필요한 경우에는 분할 영수할 수 있다.
   다.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아이폰케어용)」 및 「포괄계약 특별약관」을 첨부한 경우 보험계약 시 예치보험료를 납입하고 정산기간(매월, 매분기 등 보험료를 정산하기로 약정한 기간)마다 산출된 정산보험료를 영수할 수 있다.

5. 보험료 차등적용에 관한 사항
   「보험료 및 해약환급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적용한다.

6. 기타 필요한 사항
   가. 배당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나. 회사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보험가입금액 및 보험가입을 제한할 수 있다.
   다. 단체보험계약에 한하여 인수한다.
   라. 회사는 「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또는「이동통신사 포괄계약 특별약관(아이폰케어용)」을 첨부한 계약에 대하여,

계약자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또는 휴대폰인증 동의, 전화녹취 등)을 받은 경우에만 인수한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1)동일한 보험목적에 대하여, 이 계약 이전에 이미 받은 피보험자의 자필서명

2)동일한 보험목적(이미 피보험자의 자필서명을 받은 경우에 한함)을 양도받은 승계인의 자필서명

마. "장애인전용보험전환 특별약관" 운영에 관한 사항

- 적용근거 : 이 특약의 적용은 소득세법 및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근거한다.
- 적용범위 : 이 특약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는 보험계약에 한하여 부가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59조의4(특별세액공제) 제1항 제2호」에 따라 보험료가 특별세액공제의 대상이 되는 보험

2) 모든 피보험자 또는 모든 보험수익자가「소득세법시행령제107조(장애인의 범위) 제1항」에서 규정한 장애인인 보험

- 기타

1) 관련법령이 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변경된 법령을 따른다.

2) 회사는 이 특약의 적용을 위해 알게 된 장애인 정보를 세액공제 목적으로만 활용하고, 다른 보험의 인수심사나 보험금 심사업무 및 요율산출 업무에는 활용하지 못한다.

바. 감염병 면책 특별약관 (LMA5399)은 통계요율 이외의 보험요율로 구성된 계약에 한하여 적용한다.